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68
----------	-------

발의연월일 : 2017. 12. 1.

발의자 : 권미혁 · 남인순 · 김영호
신창현 · 윤관석 · 추미애
이재정 · 심기준 · 박경미
송옥주 · 금태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

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이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본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 ② (생략)</p> <p><u>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u></p> <p>④ ~ ⑨ (생략)</p> <p>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등의 종사자</p>	<p>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이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본문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 ----- 시·도지사는 ----- ----- ----- -----.</p>

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